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적용 제외〉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1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자격 요건)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자격 요건) ① ----- ----- ----- ----- ----- --. 다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연이자 1.7%)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졸업 이후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 상환 능

력을 갖추었을 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학 기간 중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이수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에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 소폭 상승하여 0.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OECD 38개국 중 가장 작은 수치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37명을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임.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통계>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출산율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세~49세)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녀의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자녀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2.7%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조사>

(단위: %)

구분	출산·양육 등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나이가 많 아서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돼서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서	자녀로 일에 자장을 받을 것 같아서	자녀로 여가 생활에 자장 을 받을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체	40.0	15.0	12.7	10.8	7.6	7.1	3.8	2.9
남성	34.2	14.5	19.8	8.0	7.8	8.9	4.9	1.9
여성	44.9	15.5	6.9	13.2	7.4	5.6	2.8	3.8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녀를 둘 이상 가진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¹⁾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²⁾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①등록금은 제한이 없어 전 소득 구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②생활비의 경우는 학부생은 8구간 이하인 자(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자는 신청 가능), 대학원생은 6구간 이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 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2) 참고자료

하인 자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의할 때, 현행 고시에서 제외하는 생활비 대출 구간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참고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하여 생활비 대출 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 예산 소요는 약 9억 3,000만원 정도로 예측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수혜대상 및 재정 소요 예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추가수혜대상 소득구간	대출종류	인원	대출액	국고예산 소요
학부생	9~10구간	생활비 대출	19,703	51,821	514
대학원생	7~10구간	생활비 대출	21,777	41,969	416
합계			41,480	93,790	930

또한, 현행 고시가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전 소득분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근(26년, 등록금을 9구간에서 10구간으로 신청대상 확대)에 개정된 점 등에서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소득요건은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함을 통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행 체계 하에서도 학업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등록금의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 소득분위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

고, 생활비의 경우에만 소득분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 대출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9구간의 경우에도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³⁾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 지원 정책의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려는 내용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5)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등록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고, 생활비 대출은 8구간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약칭: 학자금상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학사학위 과정·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 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자격 요건)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자격요건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및 대학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대학으로 한다.

②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학부생	내용
신청 대상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의 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학부생으로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 ** 소속대학(교)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공통)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요건	■ 등록금대출 : 제한없음 ■ 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자. 단, 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자*는 신청 가능 * ① 부모의 사망, ② 부모의 파산, ③ 부모의 개인회생, ④ 부모의 실직, ⑤ 부모의 폐업, ⑥ 본인의 파산, ⑦ 본인의 개인회생, ⑧ 본인의 폐업, ⑨ 본인이 청소년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증빙서류 등 상세 요건은 동조 제9항을 따른다) ※ (공통)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요건 적용 제외
연령 제한	■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대상일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대출 한도	■ 등록금대출 : 실소요액 전액 ※ 1인당 등록금 대출금액 총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학기당 200만 원

③~⑨ 생략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학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